

On-Line 중재 상담실

Q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심리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상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 이민자는 아니며 해외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언론사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 소속 직원, 변호사 등에게 조정신청 사건을 위임하여 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새 언론중재법에 대한 질문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나요? 법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거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하지만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중재(실질적으로는 조정)는 조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FAQ 에 보니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조정·중재신청을 해야만 하고 보도내용 중 팬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팬은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아니기에 조정·중재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심의팀입니다.

시정권고 신청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자도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입니다.

시정권고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지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구술, 전자우편 등 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정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KBS 전주방송 뉴스에서 2005. 8. 31 ~ 2005. 9. 2 저녁뉴스 까지 연일 보도하고 있는 “군산 향운노동조합” 관련하여 일방적인 편파보도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글 올립니다.

문의사항은

1. 공영방송인 KBS가 현재 수사 중인 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
2. 수사결과 다른 사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보도 내용이 비슷한 사항을 연일 계속해서 방송해도 되는지
3. 공영방송 KBS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민간인인 제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보도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인지라 정정보도 보다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올 듯 보입니다. 물론, 추후에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 무혐의가 밝혀진다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보도에 직접 언급이 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사안의 경우 향운노동 위원장, 부위원장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도내용이 비슷한 사항을 연일 계속해서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보도내용이 현저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당사자가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잡지책에 올라온 사진

저의 형이 형사상 잘못을 해서 2004년 11월 15일 부터 검거가 된 24일까지 공개수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검거가 되었으니 공개수배는 자동으로 해제가 됐구요.

그런데 모 잡지책 2005년 1월호에서 저의 형 사진과 다른 여러 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죄자를 찾으라는 퀴즈가 나왔다고하는군요.

그리고 그 사진은 경찰서에만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잡지회사에서 사진을 구했는지도 의문이구요.

저의 형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교도소에서 책을 보았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사안은 신청인 형의 초상권 및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 형의 공개수배가 해제되었고 흥미위주의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의 공공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인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할 소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보도 수정바랍니다.

www.economist.com(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기사에서 조류독감에 200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을 몇 곳에 실고 있어 직접 수정 요청 해보았지만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 기사로 인하여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을 상대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대해서는 관할이 미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매체는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방송되는 언론보도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질의한 보도 내용에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